고척스카이돔 경기 · 문화 · 일반행사 허가사항

☐ 행사개요

○ 행 사 명 :

○ 사용일시 :

○ 장　　소 :

○ 예상인원 :

○ 사 용 인 :

☐ 시설사용

○ 행사시설 : 주경기장 및 부속시설(전광판, 음향, 냉난방, 전기조명 등)

○ 부대시설 : VIP룸, 스카이박스, 다이아몬드라운지 등 및 주차장 등 기타

☐ 제출서류 (행사 전 제출원칙)

○ 대관사용 준수사항 확약서, 안전관련 준수사항 확약서, 행사장 점검리스트

○ 경기진행(행사운영) 세부계획과 안전대책(안전요원 배치현황 등)

○ 청소계약서, 배상책임보험(관람객 안전보험 증권) 등

○ 스카이박스 사용현황 및 부대시설(VIP룸, 다이아몬드라운지 등) 사용여부

○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구조물 계산서, 방염서류 등 요청 자료

○ 기타 필요 서류

☐ 추정 사용료 납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납부 후 정산

【추정 사용료】: 000,000,000원　*산출내역 별도 첨부

○ 산출근거 : 사용인의 경기장 사용계획 및 관람권 판매계획에 의거 추정.

○ 납부시기 :

○ 납부방법 : 지정계좌에 무통장 계좌입금

※ 납부계좌 : 공단 계좌 별도 안내

【사용료 정산】

○ 정산시기 :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기한 엄수)

- 관람권 판매현황 자료를 행사 종료 후 정산일 이내 반드시 제출

○ 정산방법 :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추가징수 또는 차액반환

허 가 조 건

【고척스카이돔 야구장】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 ”에 한 한다.

제1조의2(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4. 로 한정한다.

제2조(사용료) 사용인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정사용료를 행사(경기)전에 지정 계좌로 예납하고 행사(경기) 종료 후 전체 사용료를 30일 이내에 정산한다.

제2조의2(사용료 내역) 사용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8조 및 별표2 내지 별표6,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시 또는 사용허가 시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 결과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료 (평일 주간, 단위 : 원)

구 분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야구장	224,000	336,000	538,000
다이아몬드라운지	1일 993,000 (1루측절반 502,000, 3루측절반 491,000) / 2시간 249,000 (1루측절반 126,000, 3루측절반 123,000)		
대회의실	1일 410,000 / 2시간 103,000		
아마야구기념관	1일 807,000 / 2시간 202,000		
전면광장 다목적실(1일)	118,000		
공연준비실(1일)	394,000		
VIP ROOM(1일)	1,054,000		
스카이박스(1일)	1,16 - 911,000 / 2,15 - 268,000 / 3,14 - 259,000 / 4,13 - 263,000 5,12 - 277,000 / 6,11 - 359,000 / 7,10-291,000 / 8,9-295,000		

(각 부대시설 금액은 매년 감정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3. 중계방송료는 1회 국내〈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TV 144,000원, 라디오 72,000원, 〈체육경기〉 TV 96,000원, 라디오 48,000원, TV녹화·녹음은 중계방송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프로, 국제경기는 2배를 징수하며, 인터넷 중계, 케이블TV,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중계방송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상업사용료는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기준 현수막, 간이음수대 등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5㎡ 1점) 60,000원(1㎡시 12,000원)이며, 현수막, 배너 등 승인받은 광고물만 설치할 수 있고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명기되지 않은 상업사용료는 아래 호 및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결과에 따른다.
   가. 차량에 설치된 전광판(LCD) 사용 영상물 표출(공연 실황중계 불가) 경우 1대 1일 250,000원(단순한 행사 홍보시 100,000원)
   나.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의 경우 판매부스 1개당(5㎡ 기준) 50,000원
5. 부속시설사용료

구 분	산출 내역
전기조명료	(월기본료×1/30)+실제 사용한 전기료
냉·난방료	• 기계사용료=1일 기본료(30,000원)+실제 사용한 유류·가스, 급수사용료 • 전기사용료 = (월기본료×1/30)+실제 사용한 전기료
음향시설	1일 기본료 60,000원+실제 사용한 전기·유류 사용료
컬러전광판	1일 기본료 문화예술행사(2,000,000원), 체육·공공·일반행사(500,000원) + 실제 사용한 전기료

6. 관람권 미발행 행사(경기)시 입장료는 1인당 500원이며, 허가시 예상인원 보다 추가되는 인원이 입장시 1인당 5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다.
7. 관람권을 발행하는 행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람권 수입 총액 중 체육경기는 100분의 10, 공공행사 · 문화예술행사는 100분의 8, 일반행사는 100분의 15를 관람권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조례 제9조에 의한 입장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좌석별/등급별 관람권판매량의 10%(문화 · 예술행사는 15%) 이내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관람권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람권과 동일한 관람권사용료를 부과한다.
   다. 사용인은 판매 종료 후 즉시 전산판매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 전산판매현황에 대한 자료 필요시 사용허가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조의3(사용시간)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절기(04월~09월)】

조기	주간	야간
05:00~08:00	08:00~19:00	19:00~익일 05:00

2. 【동절기(10월~다음해 03월)】

조기	주간	야간
06:00~09:00	09:00~18:00	18:00~익일 06:00

3.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를 시작한 때로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 및 청소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제2조4(사용료 반환)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사용료 추산총액(전용사용료, 관람권사용료(입장료), 부속시설사용료, 광고료 등)의 100분의 10을 선납금으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하고,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 선납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개시 전일까지 행사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는 동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를 반환한다.

구 분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 요청 시기	반환 정도
전용사용료 (입장료포함)	60일전	10분의 7
	59~30일전	10분의 5
	29~20일전	10분의 3
	19~10일전	10분의 1
	9~1일전	반환하지 않음
관람권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기타사용료포함)	20일전	10분의 9
	19~15일전	10분의 8
	14~10일전	10분의 7
	9~5일전	10분의 6
	4~1일전	10분의 5

3.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3조(시설 사용범위)

1. 경기장의 각종 시설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범위는 주경기장 및 관중석, 부속시설, 외부광장(보행데크 등) 일대, 기타 부속시설로 하며, 광장 행사는 사전에 공단(경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범위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치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행사(경기)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개문, 냉·난방, 점등, 음향시설, 부속실 등의 사용 시간 및 현황)은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사유로 인한 갑작스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사용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광장에서의 공연 등 과도한 음향사용으로 소음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3. 폭죽·꽃가루 사용 등 경기장 시설에 손상 등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단, 사전에 허가를 득한 사항은 예외
4. 경기장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4조의2(입장 또는 사용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사용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할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기타 공단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자
3.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

제5조(사용인의 의무) 사용인은 경기(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람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경기장 주변의 교통통제 등 교통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경찰서, 한국철도공사(구일역) 등)에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경기장 질서유지를 위한 입출입 안내요원, 주차질서 유도요원, 사용시설에 질서요원을 배치하고 특히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요원 및 응급의료반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의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인 측에 있다.
3. 사용인은 행사 실행계획서에 행사 세부계획 및 관람객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필요시 사용인이 설치하는 일체의 가설물(전기, 설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무대 설치 시, 무대설치장소 및 장비 반입로, 무대주변에는 보강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련 준수사항을 무대자재 반입 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용인이 사용기간 중 가설구조물(무대, 조명, 음향, 리깅 등) 설치 시 건축구조기술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고 설치 1주일 전까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서명 및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사 주최측 및 행사발주자, 안전총괄책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행사 2~3일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6. 행사의 안전사고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행사 안전보험(관람객 영업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연법 제11조 및 관련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관객수 1천명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개시 14일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 국가, 서울시 또는 "공단(경기장)"이 관련 법령 및 필요에 따라 각종 재난에 관한 긴급조치, 훈련, 점검을 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8. 고척스카이돔은 테러대상시설으로 지정되어, 사용자는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화재, 무대붕괴, 테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재난대응대책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자 산재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잔디 위에서 공연 등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잔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세부 보호대 설치는 시설물 안전매뉴얼에 따라 설치
10. 경기 및 행사시 비닐응원막대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며,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 하고, 1회용 플라스틱 감소 및 분리수거 강화 방안 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그라운드 사용시, 사용자는 그라운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그라운드 원상복구비를 예치하거나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용인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확인 및 안내는 행사 주최측에서 진행하며, 관련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발생한 모든 책임은 행사 주최측에 있다.
13. 사용인은 행사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일반석과 고척스카이돔에 구비되어 있는 휠체어석(40석)을 구별하여 판매해야한다.
14. 사용인은 어린이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시 '어린이 동반가족 우선입장(Fast Track)'을 운영한다.(별도 출입구 또는 우선 입장 시행)(권고 사항)

제6조(사용허가의 일시정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경기장 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 시
2.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3. 과도한 음향사용으로 인한 소음 민원 발생 정도가 심할 때
4. 기타 공단이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단(경기장)은 허가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한 추정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추정사용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허가 시설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람객의 안전대책수립 등 공단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시위 · 집회 · 행사 등 경기장 내 행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2(사용취소 및 변경)

① 공공 목적의 국가 또는 서울시의 행사 및 시설물 보호, 국가 또는 서울시 등 재난상황 등에 시설물 운영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 변경할 수 있다.

②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사항(태풍·폭설 및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염병 포함)으로 시민안전을 위하여 행사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행사주최측은 이에 따라야 하며, 기 납부한 시설사용료 외 비용 등은 서울시 및 공단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의3(허가 내용의 변경) 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한 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행사(공연)와 관련하여 공단과 협의없이 출연진(아티스트) 및 공연일시, 주최측, 주관사를 변경할 경우 사용허가 사항이 자동 취소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및 반환)

① 사용허가 시설에 대하여 공공 · 공익 또는 시설관리의 목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시설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나면 사용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 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인은 경기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허가기간 중에 발생한 선수, 출연자, 관중

및 현장투입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및 민·형사상 분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잔디 훼손 등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상태 및 파손여부를 사전사후 점검확인 하여, 파손 시 시설 발생 시,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 내에 설치, 보관 중인 사용인의 물품, 장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공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매점 사용권 및 물품 판매)

① 고척스카이돔 내 매점은 공단(경기장)에서 운영권 일체를 가지며, 경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이 필요에 의해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공단(경기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판매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인 측에 있다.

제11조(경기장 광고물 및 시설물)

① 행사 이전에 공단에서 직접 또는 대행 설치 운영 중인 경기장 내·외곽의 각종 광고물 또는 관람객 안내를 위한 사인물을 가리거나 손상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용인은 위 광고물 또는 사인물을 가리거나 손상을 주는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공단의 철거 요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인 측에서 행사에 필요한 부착물 및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원상회복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부착물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사용허가 받은 시설이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광고물 게첨 및 노출은 금지한다. 이를 위반 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인 측에 있다.

제11조의2(시설사용에 따른 청소)

① 체육시설사용에 따른 청소는 조례 규정에 의거 사용인이 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용인에게 청소비를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서를 공단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청소용역업자가 청소업무를 대행할 시, 수거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수막, 현판 등 기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용인이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객만족 제고) 사용인은 본 행사의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관람객 등의 고객만족을 위해 고객 친절응대 및 안내와 고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1. 사용인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준수) 체육시설을 사용허가 신청하여 사용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 안전관련 준수사항 1부.

붙임	안전관련 준수사항

안전관련 준수사항 확약서

□ **행 사 명 :**

□ **행사기간 :**

□ **행사주관사(사용인) :**

1. 행사관련 시설 설치 및 철거시 준수사항
   1) 무대총괄자는 **무대 설치전 필히 안전교육실시 후 서명부 제출**
   2) 모든 작업 시 **안전모 착용**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安全帶) 착용**
   4)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 **모든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퇴출**
2. 화재 시 **피난대피 모의 훈련 진행**
3. 무대자재 반입 차량, 이동 동선, 출입구, 위험장소에는 **안전요원 배치**
4.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방법 숙지 및 소화기 비치**
5. 소방시설(방화문, 소화전 등) 적치물 금지
6. 경기장 내 도색 및 **화기취급 작업금지**
7. 사용자재 등 무대설치 전 **방염 시험성적서** 제출
8. 화약류 연출효과에 대해 **사전 리허설(시험 테스트 등) 실시**하여
9. 폭죽 운영시 발사각 조정으로 잔디피해 최소화 및 화재예방 대책마련 (해당 경찰서 신고제품 사용)
10. 기타 안전관리 등 제반 규정 준수

2024. . .

회사명 :

행사 총괄책임자 : (서명)